

건축사공제조합 소식지 Vol.50 2020. 05. 29

운앵행황

☑ 공제사업 현황(2020. 4. 30 기준)

1. 조 합 원 : 9,185개사 [조합원 건축사 : 9,409명]

2. 자 본 금 : 288억 6,700만원 (자본총계 : 422억 7,596만원)

3. 자산총계 : 459억 7,529만원

るかりから

☑ 한도약정 융자한도 변경 안내

• 조합원별 융자한도를 출자지분액의 0.8배로 통일하고자 함.

변경 전	변경 후	시행예정일
출자지분액의 0.8~0.9배 (약정연대보증인 유무에 따라)	출자지분액의 0.8배	2020년 6월 1일

☑ 손해배상공제 신상품 '해체감리' 안내

• 「건축물관리법」의 제정됨에 따라,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<u>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손해</u> 배상공제요율을 신설함.

• 시행예정일자 : 2020년 6월 1일

☞ 요율표 참고 : 홈페이지 - 업무안내 - 손해배상공제업무

☑ 2020년도 출자지분 확정 안내

• 제5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, 2020년도 출자지분이 좌당 138,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
1. 출자 시 좌당금액: 138,300원

⇒ 조합가입 시 최소출자 5좌 (691,500원)

2. 약정 시 좌당금액: 상동

⇒ '20. 4. 13 약정체결 건부터 적용

※ 기 약정체결 조합원은 약정갱신을 하셔야 2020년도 약정 좌당금액이 적용됩니다.

☑ 보증 한도 상향 방법

1. 보증서 해제를 통한 한도 상향	입찰보증서	보증기간 종료 후 유선요청	
	계약보증서	· 업무완성증명서 제출(조합서식) · 완수확인서 제출(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) · 실적증명서 제출(발주처 발행) · 하자보증서 발급	
	하자보증서	보증기간 종료 15일 후 유선요청	
	선급금보증서	· 업무완성증명서 제출(조합서식) · 완수확인서 제출(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) · 실적증명서 제출(발주처 발행) · 하자보증서 발급 · 선급금정산확인서 제출(조합서식)	
	추가출자 서류는 조합으로 우편발송 하셔야 합니다. ☞ 정보마당 - 서식자료실 - 40.추가출자 & 39.약정서 서식		
2. 추가출자에 의한 한도 상향	1좌당 한도 금액	1 차당 금액: 134,460원(2019년 기준) ① 소액한도거래약정의 경우 (연대보증인 無) - 이행한도: 1좌 X 12배 = 1,613,520원 - 지급한도: 1좌 X 6배 = 806,760원 ②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(연대보증인 有) - 이행한도: 1좌 X 40배 = 5,378,400원 - 지급한도: 1좌 X 20배 = 2,689,200원	

- ※ <u>추가출자 시</u>에는 출자금에 대한 공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<u>소요기간이 2-3일 걸리오니</u>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 - **공증 사유** : 조합이 각종 보증 등을 이행함에 있어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조합원의 출자증권에 질권설정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함.

☑ 보증 한도 확인 방법

-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여유한도가 보증금액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보증여유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보증서들을 '해제' 하거나 추가 출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
 - ※ 보증서 한도 확인 :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공제업무거래현황 약정현황 보증사용액 세부내역 확인 : 인터넷발급 - 보증업무 - 보증서발급현황

☑ 조합원 및 대표자 정보 변경 요청

조합원 및 대표자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소재지 등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으면 우편물,
 소식지 등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'조합 홈페이지 內 마이페이지 → 정보변경 → 조합원
 및 대표자 정보변경'을 통해 연락처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